

시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2227호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조 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7242호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인천광역시조례 제7243호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 인천광역시조례 제7244호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인천광역시조례 제7245호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 인천광역시조례 제7246호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27
- 인천광역시조례 제7247호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 인천광역시조례 제7248호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33
- 인천광역시조례 제7249호 인천광역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39
- 인천광역시조례 제7250호 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2
- 인천광역시조례 제7251호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 45
- 인천광역시조례 제7252호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 인천광역시조례 제7253호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50
- 인천광역시조례 제7254호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 54
- 인천광역시조례 제7255호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일부개정조례 56
- 인천광역시조례 제7256호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58
- 인천광역시조례 제7257호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1
- 인천광역시조례 제7258호 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 63
- 인천광역시조례 제7259호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67
- 인천광역시조례 제7260호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에 관한 조례 69
- 인천광역시조례 제7261호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3

회 람								
--------	--	--	--	--	--	--	--	--



조 례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242호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주민조례청구 절차”를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

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의장”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주민조례청구의 철회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2조 및 이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

명과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적어야 한다.

④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법 제15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로, “두어”를 “두고 공표한 날부터 10일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6호”를 “별지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규칙”을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한 절차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

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민 조례안”을 “주민조례발안 조례안”으로, “등 주민조례발안제도에”를 “등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를 “주민조례발안 관련 사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4. 제2조제1항에 따른 홍보, 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사무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민조례청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input type="checkbox"/>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input type="checkbox"/>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 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명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청구이유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 이용신청

[] 이용신청 안함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 대표자 전화번호
[]공개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공개 []비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공동대표자용 []청구 · []철회 · []선정대표자 지정 서식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청구인의 대표자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선정대표
						선정대표
						선정대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 []철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의장 귀하

작성방법

- “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 “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3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4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6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직인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이의대상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	--

신청 취지	
-------	--

신청 사유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의회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개정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동대표자 및 선정대표자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나. 주민조례청구의 철회 및 대표자의 변경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의2 신설)
- 다. 청구인명부의 작성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하여 규정함.(제11조의2 신설)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243호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에 따라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관한 소송비용만 지원한다.

별표 제1호 형사소송의 착수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사단계(검찰 기소 전) 1,000만원 이내

※ 수사 종결 사유가 기소유예인 경우 지원 제외

나. 각 심급별 1,000만원 이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수사 및 소송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 확보 및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무원 등의 범위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포함함.(제2조제1호마목 신설)

나. 신설된 제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관한 소송비용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1항 단서 신설)

다.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단계 및 검찰수사단계에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별표 제1호 형사소송의 착수금란)

인천광역시회의의 의결을 얻은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244호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사는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의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자가액이 50억원 미만인 재산
2. 시에서 출자 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3. 기존에 의회 의결을 받은 택지개발사업, 주택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사업 등에 시에서 출자 받은 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한 후 공개할 수 있다.

1. 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2. 공사가 소유한 자산현황
3. 공사가 시행한 주요 개발사업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공개항목, 시기 및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인천도시공사의 지역 현안 개발사업 추진 및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사의 재산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사전에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을 규정하고 공사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장의 관리·감독 및 의회 보고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공사의 정관 변경 등 시장이 인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함.(제6조제3항 신설)
- 나. 공사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는 규정을 신설함.(제3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다. 시장이 공사의 업무·회계·재산 등에 관하여 검사를 한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신설함.(제4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라. 공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규정함.(제43조)

인천광역시회의의 의결을 얻은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245호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위해”를 “위해 제3항의 방법으로”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안전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전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위해”를 “위해 제5항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은 안전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전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안전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전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 임기전이라 하여도”를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손상,”을 “손상하거나”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4조(「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23조제4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시장은 안전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전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5조(「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4항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시장은 안전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전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7조제5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은 안전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전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7조(「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4항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 ④ 시장은 안전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전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8조(「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5항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시장은 안전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전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⑥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9조(「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

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22조제5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2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은 안전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전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10조(「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따라”를 “따라 제3항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협의회”를 “그 밖에 협의회”로 한다.

- ③ 시장은 안전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전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인천광역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촉진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촉진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13조제4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13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업무관

련과장”을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 ④ 시장은 안전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전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안전이 접수되었거나 안전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안전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 중 회의 개최 실적이 적은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구성·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비상설위원회의 성격에 맞도록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을 정비함.(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246호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행정사 운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 전문가인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3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다만,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

3.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제4조(위촉 등) ①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군·구별 12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인천지부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6조(상담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주소 둔 시민과 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7조(상담방법) ① 행정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

으로 한다.

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상담결과 처리) 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내용과 실적을 마을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대면상담과 대면상담 등은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행정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마을행정사 운영에 뛰어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와 담당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마을행정사를 위촉하여 행정과 관련된 시민 고충해소와 무료 행정상담 및 설명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제1조)
- 나.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 다. 마을행정사 역할 및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 라. 상담대상 및 상담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 마. 상담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 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247호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합의회행정기관

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1월 15일”을 “1월 31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1항”으로, “3월 15일”을 “2월 28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생산·유통·소비 관련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환경부의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되어 있던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신청자격이 삭제되어, 녹색제품 소비 활성화 관련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녹색제품 구매의 촉진을 위하여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을 추가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함.(제3조제1호)
- 나. 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를 대신하는 위원회 명칭을 변경함.(제4조제2항)
- 다. 운영 실정에 맞게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제출기한을 조정함.(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
- 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로 한정된 민간위탁 신청자격을 녹색구매, 녹색소비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함.(제12조의2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248호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관리·운영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3.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
- 나.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대중교통시설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
4.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체계에 대한 지원 강화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연계성 강화

② 시장은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수단·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전원 근무 투입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자는 여객의 생명·신체 및 재

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를 역무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대중교통운영자는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대중교통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대중교통의 안전) 시장은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대중교통의 보건위생 증진) ① 시장은 대중교통분야의 감염병 대응 및 예방 등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이용 시 감염병 예방 및 확산·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소속 직원과 대중교통수단·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운송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광역정책의 경우 국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시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시장은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2. 고가도로 또는 지하도로 등 교차로의 입체화
3. 노선버스 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4.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른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제12조 (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 ① 시장은 대중교통 간 또는 대중교통과 개인교통 간의 연계성 및 환승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시설 확충 및 환승서비스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등을 개발할 경우 다른 대중교통 간의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운영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제고에 필요한 사항과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 증진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정의 및 시장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시민의 권리와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및 교통약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5조의2까지)
- 다. 대중교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라. 대중교통의 안전, 보건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 마.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 및 시설의 체계적 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및 제10조)
- 바. 대중교통 우선통행 조치 및 연계성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 및 제12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249호

인천광역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및 장소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2.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노인 및 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또는 제3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보호구역의 관리 등) 시장은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규칙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3.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지원인력 배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제6조(교통안전교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다.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250호

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 관리, 어가소득 증대, 어업질서 유지 등을 위한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책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수산업·어촌 발전 주체로서 어업경영 개선과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육성 세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사업 지원대상 공동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공동체 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체 육성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체 우수사례 발굴·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율관리어업 관련 국내외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체 육성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어장관리·수산자원관리·경영개선기술 도입을 위한 국내외 연수교육
3. 자율관리어업 파급·홍보를 위한 성공사례 경진대회 등 전국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공동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공동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어업인 또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어업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인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장환경 개선, 수산자원 회복, 어가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세부 추진계획을 규정함.(제6조)
- 라. 공동체 육성사업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251호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군·구에 두는 협의체를 말한다.
2. “사무국”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일반 행정업무, 협의체 법정 역할 및 회의 운영지원, 사회보장 기관 간 연계업무 수행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사무집행 기관을 말한다.
3. “전담인력”이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지침」

에 따라 공개 채용된 사무국 소속의 사람으로서, 지역 내 자원개발, 복지문제 해결 및 사업 기획·육성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군·구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및 지원방안
4. 민간참여 및 민간자원 활용 방안
5.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성 향상 및 올바른 기능 수행을 위해 사무국 전담인력 및 구성원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

관·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을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규정함.(제5조)
- 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여에 따른 포상을 규정함.(제6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252호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공공심야약국”을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응급실 외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휴일 소아경증환자에게 신속한 의
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을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지정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제4
조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253호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화 개선을 통해 시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의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개선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① 시장은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영업자 등에게 법 제8조의2에 따라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안내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등) ① 시장은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최근 우리나라는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식품에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약떡볶이 등 마약이란 용어가 식품의 명칭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이에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홍보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이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을 저해하는 바,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마약류 용어 남용 문화 개선에 관한 목적을 규정함.(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 다.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제3조)
- 라.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제4조)
- 마.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제5조)
- 바.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사.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영업자 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7조)
- 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해 추진 가능한 사업을 규정함.(제8조)
- 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9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254호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성년의 날) 시장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맞이한 청소년에
게 성년의 날 기념 축하 서한 발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청소년의 사회 첫 출발을 축하하기 위하여 성년의 날 기념 축하서한을 발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성년의 날 축하 서한문 발송 사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제4조의2 신설)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255호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30명”을 “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를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로,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업무 관련 실·국장”을 “업무를 관장하는 실·국장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변경하고, 제물포르네상스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향후 인천 전역의 원도심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정원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위원정수와 위원장의 자격을 변경함.(제8조)
- 나.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위원정수를 변경함.(제11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256호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60명”을 “100명”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간”을 “오랫동안”으로, “이해 관계인”을 “이해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한정면허 포함)”을 “(한정면허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 거소지, 사무소 등을 허가권자가 알 수 없는 경우

제28조의 제목 “(대지의 분할 제한)”을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90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에”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한다.

제4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감경 이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감경 이행기간에 관한 특례) 제45조제5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경우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도래하는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이후 1년이 되는 날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본다.

◇개정이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60명 이하에서 100명 이하로 확대함.(제6조제1항)
- 나. 현황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주소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도로지정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제24조제6호 신설)
- 다. 주거지역 대지의 분할 제한 최소 면적기준을 9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하향 조정하여 분할 제한을 완화함.(제28조제1항)
- 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북방향 일조권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조정함.(제32조제1항)
- 마. 이행강제금 감경의 조건이 되는 위반내용의 시정기한을 신설함.(제45조제5항 신설)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257호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100분의 30을 말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다만, 준주거지역 및”을 “다만,”으로 한다.

1. 준주거지역

가. 100분의 20(공공임대주택만 건설하는 경우)

나. 100분의 25(가목 이외의 경우)

2. 상업지역: 100분의 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 또는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신청(사업시행계획변경에 따른 변경심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적률 상한을 적용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완화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준주거지역에서 법적상한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일부 조정함.(제26조제1항)
- 나. 준주거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에 비례하여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삭제함.(제26조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258호

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과 관리·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걷는 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길의 원래 형태를 적극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도보가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
2. 걷는 길을 중심으로 고유한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조화롭게 연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3.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은 관련 단체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걷는 길”이란 인천광역시 시민 및 도보 여행객(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문화·자연환경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위치한 길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시민 등의 권리와 의무) 시민 등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걷는 길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자연환경과 문화자원 및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걷는 길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는 길 현황 및 전망
2.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3. 걷는 길 교육·홍보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걷는 길 관리에 관한 부서, 기관 등 협력에 관한 사항
5. 걷는 길 자연환경 보전과 시민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는 길 코스 개발 및 보완

2. 걷는 길 안내체계 구축 및 편의시설 설치

3. 탐조활동 등 생태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 걷기대회 등 주민 참여 사업

4. 걷는 길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걷는 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걷는 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걷는 길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의 참가자에 한정하여 시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 시장은 걷는 길에 대한 시민등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는 길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한 자료 제작

2. 걷는 길 전문가 포럼, 워크숍 및 주민설명회 개최

3. 걷는 길 운영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4. 해설사 등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걷는 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내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
과 관리·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건강 및 삶
의 질 증진과 생태보전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함.
(제1조 및 제2조)
- 나. 인천광역시 걷는 길 관리·운영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
고, 시민과 관광객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함.(제4조 및 제5조)
- 다. 인천광역시 걷는 길 관리계획의 수립·시행관리·운영을 규정함.
(제6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3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259호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앞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
사에 대한”을 “앞을 경우 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⑤ 부실시공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한하여”를 “건설공사로 한정하여”
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4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 기한’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공사관계자의 경각심을 갖도록 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확대함.(제7조)
- 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에서 준공 완료된 건설공사를 삭제함.
(제14조제1호 삭제)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260호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치기준) 시장은 효율적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물막이판
2.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4. 충수용 급수설비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제5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의 추진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증가 및 충전시설 설치 확대로 관련 화재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 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라.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마. 관계인에 대한 권고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바.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261호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 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는 위원이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3.11.10.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대상과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제6조제3항 신설)

나.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원격영상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제4항 신설)